

군포도시공사 제6회 이사회에서 의결되고 군포시장 승인을 받은 「군포도시공사 업무직근로자 관리규정」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군포도시공사 사장 배재국



2025년 11월 21일

군포도시공사 규정 제 157 호

군포도시공사 업무직근로자 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

군포도시공사 업무직근로자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0조 제2항의 별표2를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.

수당 및 복리후생비 지급기준

구 분	지급금액	지급시기	비 고
복리후생비	정액급식비	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준용	매 월

제31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제30조의2 제4항에 의해 급여가 감소하는 경우, 본인이 신청시 중간정산을 실시하며, 이 경우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된 근로자는 확정기여형으로 전환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 관 부 서		경 영 기 획 실
입 안 자	직 위 성 명	경 영 기 획 실 장 곽 성 우
	직 위 성 명	인 사 총 무 팀 장 신 재 두
	담당자 성명 (전 화)	이 유 경 (3 9 0 - 7 6 4 3)

신·구 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1조(퇴직급여)	제31조(퇴직급여)
①~② (생략)	①~② (현행과 같음)
③ <신 설>	③ 제30조의2 제4항에 의해 급여가 감소하는 경우, 본인이 신청시 중 간정산을 실시하며, 이 경우 확정 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된 근로자 는 확정기여형으로 전환한다.

현 행			
[별표 2] 수당 및 복리후생비 지급기준			
구 분	지급금액	지급시기	비 고
복리후생비	정액급식비	월140,000원	매 월
개 정 안			
[별표 2] 수당 및 복리후생비 지급기준			
구 분	지급금액	지급시기	비 고
복리후생비	정액급식비	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준용	매 월

관계법령

□ 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」 제32조(사용자의 책무)

⑤ (생략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통하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(DC형)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의 변경, 퇴직급여 산정 기준의 개선 등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1. 사용자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한 연령,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조정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제도를 시행하려는 경우